

부속서 16A
정부조달 범위

부록 16A.1
기관 명단

양허표 1

제16장(정부조달)과 그의 부속서에 의하여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

1. 양허하한선

물품

부록 16A.2의 양허표 1에 명시

양허하한금액 : SDR 100,000

서비스

부록 16A.2의 양허표 2에 명시

양허하한금액 : SDR 100,000

건설서비스

부록 16A.2의 양허표 3에 명시

양허하한금액 : SDR 5,000,000

2.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기관 명단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여성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통일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과학기술부
국정홍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조달청(이 목록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구매분에 한하며, 이 목록의 양허표 2 및 양허표 3의 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범위와 양허하한선에 따른다.)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기상청

경찰청(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대검찰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철도청(대한민국정부는 철도청을 공사화할 계획이며, 이 경우 대한민국정부는 협의 및/또는 보상없이 철도청을 양허표 1로부터 양허표 3으로 옮길 권리를 가진다)

해양경찰청(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매를 제외한다)

3. 싱가포르의 중앙정부기관 명단

감사실
법무장관실
내각실
총리실
사법부
교통부
지역사회개발스포츠부
교육부
환경부
재무부
외교부
보건부
내무부
정보통신예술부
인적자원부
법무부
국가개발부
통상산업부
국회
대통령 협의회
총리실
공직위원회
국방부

이 장은 정부조달협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싱가포르의 결정에 의하여 싱가포르 국방부의 다음의 군급번호 분류(다른 것은 제외한다)에 의한 구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군급번호	품목
22	철도장비
23	지면효과차량·모터차량·트레일러 및 자전거
24	트랙터
25	차량장비부품
26	타이어와 튜브
29	엔진부속품
30	기계전력송신장비
31	베어링

32	목공기계 및 장비
34	금속가공기계
35	서비스 및 무역 장비
36	특별산업기계류
37	농업기계 및 장비
38	건설·광업·굴착 및 고속도로 유지장비
39	재료처리장비
40	줄·케이블·체인 및 부품
41	냉동·공기조절 및 공기순환장비
42	소방·구출 및 안전장비
43	펌프 및 압축기
44	노, 증기공장 및 건조장비
45	배관·가열 및 위생장비
46	정수 및 하수처리장비
47	파이프·튜브·호스 및 부품
48	밸브
51	수공구
52	측정도구
53	하드웨어 및 연마제
54	사전제작구조물 및 건물비계
55	목재·제재작업·합판 및 단판
56	건설 및 건축자재
61	전기선·전력 및 배분 장비
62	조명·불박이 및 램프
63	경보·신호 및 안전탐지시스템
65	의학·치과·수의장비 및 물품
67	사진장비
68	화학약품 및 화학제품
69	훈련보조구 및 장치
70	범용 자동데이터처리장비·소프트웨어·물품 및 보조장비
71	가구
72	가정 및 상업용 가구 및 기구
73	음식준비 및 급식장비
74	사무기계, 텍스트처리시스템 및 가시기록장비
75	사무용품 및 장비
76	책·지도 및 그 밖의 출판물
77	악기·축음기 및 가정용 라디오
78	휴양 및 운동장비

79	청소장비 및 물품
80	솔·페인트·밀폐기 및 접착제
81	용기·포장 및 짐꾸리기용 물품
83	직물·가죽·모피·의복 및 구두부속품·텐트 및 깃발
84	의복·개인장비 및 훈장
85	화장품류
87	농업용 물품
88	살아있는 동물
89	생계
91	연료·윤활유·기름 및 왁스
93	비금속가공재료
94	비금속원재료
95	금속 막대, 박판 및 형재
96	광석·광물 및 이의 1차 상품
99	기타

4. 부록 16A.1의 양허표 1에 대한 주석

대한민국의 경우

1. 위의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하부조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을 포함한다.

2.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판매·재판매 또는 판매용 물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달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 조달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국방군수본부는 국방부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 협정은 정부조달협정 제 23조제1항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의 구매에 대하여는 다음 군급번호 분류품목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부록16A.2의 양허표 2 및 양허표 3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와 건설 서비스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만 적용된다.

군급번호	품목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구조부품
2520	차량 동력전달장치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속품
2590	그 밖의 차량부품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부품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부품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부품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여과기 및 정화기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속품
3020	기어·활차·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3416	선반
3417	절삭기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4110	냉동장비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4520	공간 난방장비 및 가정용 온수기
4940	그 밖의 유지·보수점의 전문장비
5120	모서리가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5410	사전제작구조물 이동식 건축물
5530	합판 및 단판
5660	울타리제작·울타리 및 문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5965	헤드세트·송수화기·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도파관 및 관련 장비
5995	선·코드 및 전선조립체 : 의사소통장비
6505	약품 및 생물제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6840	살충제
6850	잡종화학특제품
7310	식품조리·제빵 및 급식장비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7330	주방용품 및 그릇
7350	식기
7360	취사 및 급식용품
7530	문방구 및 기록양식

7920	비·솔·걸레 및 스폰지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8110	드럼 및 깡통
9150	기름 및 윤활유 : 절삭용·윤활용 및 유압용
9310	종이와 판지

싱가포르의 경우

1.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외교부의 재외공관 및 본부건물 공사계약, 그리고

나. 내무부의 국내안보부·형사수사부·안보과 및 중앙마약국의 계약 뿐만 아니라 내무부의 안보 관련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비적용 대상기관을 위하여 적용대상기관이 수행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허표 2

제16장(정부조달)과 그 부속서에 따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

1. 양허하한선

물품

부록 16A.2의 양허표 1에 명시

양허하한선 : SDR 200,000

서비스

부록 16A.2의 양허표 2에 명시

양허하한선 : SDR 200,000

건설서비스

부록 16A.2의 양허표 3에 명시

건설서비스에 관한 현행 정부조달협정의 양허하한선은 공통 양허하한선 사안이 제22.1조에 규정된 이 협정의 검토회의에서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유지될 것이다. 동 회의에서 양허하한선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고려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기관 명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3. 싱가포르의 지방정부기관 명단

싱가포르에는 적용되지 않음(싱가포르에는 지방정부가 존재하지 않음)

4. 부록 16A.1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대한민국의 경우

1. 상기 지방정부행정기관은 직접 통제하의 하부조직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2.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지방채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허표 3

제16장(정부조달)과 그 부속서에 따라 조달하는 그 밖의 기관

1. 양허하한선

물품

부록 16A.2의 양허표 1에 명시
양허하한선 : SDR 400,000

서비스

부록 16A.2의 부속서 2에 명시
서비스 및 양허표 3 기관의 서비스 양허하한선에 관한 현행 정부조달협정의 입장은 서비스와 양허표 3 기관의 서비스 양허하한선 사안이 제 22.1조에 규정된 이 협정의 검토회의에서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유지될 것이다. 동 회의에서 양허하한선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고려될 수 있다.

건설서비스

부록 16A.2의 부속서 3에 명시
건설 서비스에 관한 현행 정부조달협정의 양허하한선은 공통 양허하한선 사안이 제22.1조에 규정된 이 협정의 검토회의에서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유지될 것이다. 동 회의에서 양허하한선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고려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그 밖의 기관 명단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HS 8504, 8535, 8537, 8544의 물품구매는 제외)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주식회사케이티(일반통신상품 및 통신망장비 구매는 제외)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정부조달협정에서 주식회사케이티의 제외를 신청하였다. 동 기관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서 제외되면 동 부속서의 명단에서도 삭제된다.

3. 싱가포르의 그 밖의 기관 명단

과학기술연구청

건축사협회

싱가포르 항공청

건설청

경제개발위원회

주택개발위원회

싱가포르정보통신개발청

싱가포르국세청

싱가포르국제기업청

싱가포르육상교통청

주룽타운공단

싱가포르해운항만청

싱가포르통화청

난양기술대학교

국립공원위원회

싱가포르국립대학

기념비보존위원회

전문기술자협회

공중교통협회

센토사개발공단

싱가포르방송청

싱가포르관광위원회

표준·생산성 및 혁신위원회

도시재개발청

4. 부록 16A.1의 양허표 3에 대한 주석

대한민국의 경우

1.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1.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비개방 대상기관을 위하여 개방대상기관이 수행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록 16A.2

물품·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의 범위

양허표 1

물 품

1. 대한민국의 경우

부록16A.1의 양허표 제1항 내지 제3항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정부조달협정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일반주석에 따라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2. 싱가포르의 경우

이 장은 부록 16A.1의 양허표 제1항 내지 제3항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싱가포르 부록 I에 따라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양허표 2

서비스(건설 외의 서비스)

1. 대한민국의 경우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MTN.GNS/W/120문서에 수록된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다음 서비스에 적용된다(그 밖의 서비스를 제외한다).

GNS/W/120	중심상품분류	품목
1.A.b	862	회계·감사 및 부기서비스
1.A.c	863	세무서비스
1.A.d	8671	건축설계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
1.B.a	841	컴퓨터설비자문서비스
1.B.c	842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
1.B.d	843	데이터처리 서비스
1.B.c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사무기계 및 장비(컴퓨터포함) 유지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관련 임대 및 리스서비스(운전인력 제외)
1.E.b	83104	비행기관련 임대 및 리스서비스(운전인력 제외)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임대 및 리스서비스 (운전인력 제외)(15인 이하 승객차량에 한한다)
1.E.d	83106, 83108, 83109 83107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임대 및 리스서비스 (운전인력 제외) 건설기계 및 장비 무인 임대 및 리스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서비스
1.F.c	865	경영컨설팅서비스
1.F.d	86601	사업관리서비스
1.F.e	86761*	성분 및 순도시험 및 분석 서비스 (공기·물·소음도 및 진동도에 대한 측정검사·시험 및 분석서비스에 한함)
	86764	기술진단서비스
1.F.f	8811,* 8812* 8814*	농업 및 축산업관련 자문서비스 임업관련 서비스(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충해 방지 서비스를 제외한다)
1.F.g	882*	어업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과학, 기술관련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장비의 유지 및 수선 서비스

1.F.p	875	사진서비스
1.F.q	876	포장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인쇄업, 그라비아 인쇄업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1.F.s	87909*	속기서비스 및 국제회의 용역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고도/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축적·전송 및 축적·처리를 포함)
2.C.m		코드 및 프로토콜 전환
2.C.n	843*	온라인 정보 처리 (거래처리 포함)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서비스 (유선방송을 위한 서비스 제외)
2.D.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음향 레코딩)
6.A	9401*	폐수수탁처리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에 한함)
6.B	9402*	산업폐기물처리서비스(산업폐기물 수집·운송 및 처리서비스에 한한다)
6.D	9404* ,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방지서비스 (시공분야 제외)
	9406* , 9409*	환경검사 및 평가서비스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11.A.b	7212*	국제해운(연안해운 제외)
11.A.d	8868*	선박유지 및 수선
11.F.b	71233*	연안해운을 제외한 컨테이너화물운송
11.H.c	748*	화물운송주선서비스 -해운 대리점 -해상화물운송 주선서비스 -해운 중개서비스 -항공화물 운송대리점 -통관서비스
11.I		철도 소운송업

대한민국에 대한 부록 16A.2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약속에 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상세히 기술된 서비스 분야의 일부만을 나타낸다.

2. 싱가포르의 경우

MTN.GNS/W/120문서에 수록된 서비스 일반 목록 중 아래 서비스가 포함된 서비스 목록(여타 서비스는 제외)

중심상품분류	품목
641-643	호텔 및 레스토랑(음식조달 포함)
7523	전자메일
7523	음성메일
7523	온라인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7523	전자정보 교환
74710	여행사 및 여행업 운영자
7472	관광안내서비스
7512	택배서비스
84100	컴퓨터하드웨어설치 관련 컨설팅서비스
84210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컨설팅서비스
843	데이터처리 서비스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862	회계 감사 및 부기서비스
865	경영컨설팅서비스
8671	건축서비스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874	빌딩청소서비스
87905	번역통역서비스
932	수의서비스
96112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 제작서비스
96113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 배급서비스
96121	영화 상영 서비스
96122	비디오테이프 상영 서비스
96311	도서관 서비스
-	생명공학 서비스
-	상업시장조사
-	전시서비스
-	건축을 제외한 인테리어디자인 서비스
-	건축·임업·어업 및 유전서비스를 포함하는 광업과 관련된 전문직·조언 및 컨설팅 서비스

싱가포르의 부록 16A.2의 양허표 2에 대한 주석

서비스 양허안은 GATS협상에서 싱가포르정부 양허안에 명시된 제한과 조건에 적용을 받는다.

양허표 3 건설 서비스

1. 대한민국의 경우

제16장(정부조달) 및 그 부속서는 표준산품분류의 51번에 포함된 다음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다른 서비스는 제외된다).

양허되는 건설서비스 목록

표준산품분류	품목
511	정지작업
512	건축
513	토목
514	조립건축물의 조립 및 설치작업
515	전문건설
516	설비공사
517	마감공사

2. 싱가포르

MTN.GNS/W/120문서에 포함되어있는 표준산품분류의 51번의 건설서비스가 양허됨(다른 서비스는 제외된다).

중심산품분류	품목
512	건축
513	토목
514, 516	설치 및 조립공사
517	건물 완공 및 마감공사
511, 515, 518	기타

싱가포르 부록 16A.2의 양허표 3에 대한 주석

1. 건설서비스 양허안은 GATS협상에서 싱가포르정부 양허안에 명시된 제한과 조건에 적용을 받는다.

부록 16A.3 일반주석

해당사항 없음